의안 번호	87

제156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10.29.)

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 원 시 의 회

(산업경제복지위원회)

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6.10.29.

산업경제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: 2026. 10. 15. 이정희 의원 등 15명

나. 회 부 일 자: 2026. 10. 20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: 제156회 창원시의회(임시회)
제3차 산업경제복지위원회(2026.10.29.) 상정, 질의·답변, 토론, 의결

2. 제안이유(제안설명자: 이정희 의원)

○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단체 간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지원하여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.(안 제3조)

다.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함.(안 제4조)

라.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5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3조, 제42조, 제51조
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제17조, 제20조

나. 관계법령 저촉 여부: 해당 없음

다. 예산조치: 조례안 비용추계서 참고

라. 입법예고(2026. 10. 15. ~ 10. 21.): 의견 없음

5. 전문위원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전현주)

가. 제정 주요내용

○ **(안 제1조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임을 명시함.**

안 제1조 (목적)	**제1조(목적) 이 조례는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3조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**

○ (안 제2조) 시장의 협의회에 대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책무를 규정함.

안 제2조 (시장의 책무)	**제2조(시장의 책무) 창원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협의회"라 한다)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.**

○ (안 제3조) 협의회의 법정 업무 및 사회복지증진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함.

안 제3조 (지원사업)	**제3조(지원사업) 시장은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** **1.「사회복지사업법」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** **2.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**

○ (안 제4조) 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비 지원과 보조금 지원 절차를 규정함.

안 제4조 (예산지원)	**제4조(예산지원)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** **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**

○ (안 제5조) 협의회 업무에 대한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 및 지도·감독 권한을 규정함.

안 제5조 (지도·감독)	**제5조(지도·감독)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지도·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.**

나. 검토 의견

○ 본 조례안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[1]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는 것으로, 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 내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 협력과 조정, 사회복지 조사·연구 및 교육·홍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임.

○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 개정 조문이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, 시·군·구 단위의 시·군·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가 재량사항에서 의무 사항으로 바뀌게 됨.

○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는 2009년 설립되어 복지소외계층 발굴·연계, 지역사회봉사단 구축, 복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음.

○ 안 제1조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에 따른 창원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한 것으로, 상위법령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.

1)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(사회복지협의회) ① 사회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중앙협의회"라 한다), 시·도 단위의 시·도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시·도협의회"라 한다) 및 시(「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. 이하 같다)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 단위의 **시·군·구 사회복지협의회(이하 "시·군·구협의회"라 한다)를 둔다.**

1.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·연구 및 정책 건의
2. 사회복지 관련 기관·단체 간의 연계·협력·조정
3.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·협력
4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사업의 조성 등

○ 안 제2조는 시장이 협의회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,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방향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타당함.

○ 안 제3조는 협의회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, 협의회의 법정 업무를 지원 대상으로 명시하고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정한 것은 타당함.

○ 안 제4조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, 보조금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는 「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따르도록 규정한 것으로,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제17조[2]는 협의회의 운영 경비를 회원 회비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,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음을 규정함에 따라 창원시사회복지협의회 지원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.

○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연간 총 80,000천 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 중 운영비 55,000천 원, 사업비 25,000천 원으로 구성되어 있고, 기존 사업비 5,200천 원을 제외한 추가 재정부담은 연간 74,800천 원으로 추계되어 있음. 이는

2)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」 **제17조(각 협의회의 운영경비)** 각 협의회의 운영경비는 회원의 회비, **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**, 사업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**충당한다.**

조례 제정 이후 협의회의 지속적인 업무수행과 사업 추진을 위한 상근 전문인력 인건비와 경비를 확보하고, 기존 사업을 확대·개편하는 동시에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정 소요로 볼 수 있음.

○ 안 제5조는 시장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업무를 지도·감독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,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는 타당함.

○ 지역사회 복지수요가 다양해지고 민간 복지자원 간 연계와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, 협의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와 필요성이 인정됨.

○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과의 저촉 사항이 없으며, 사회복지협의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사회 복지자원의 연계·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.

6. 질의·답변요지: 기재생략

7. 토론요지: 없음

8. 심사결과: **원안가결**

9. 소수의견요지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